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035
----------	-------

발의연월일 : 2026. 7. 20.

발 의 자 : 조계원 · 허성무 · 최혁진
이재강 · 이주희 · 채현일
이광희 · 안태준 · 김문수
임오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체육회의 회장과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고, 그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경기단체(이하 “회원종목단체”라 한다)의 회장 선거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하도록 하는 명시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회원종목단체는 해당 종목의 선수 등록, 경기 운영, 심판·지도자 관리, 국가대표 선발 및 국제대회 참가 등 종목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단체임. 또한 상당수 회원종목단체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는 등 그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이 확대되고 있으며, 체육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제도 등 체육단체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요구도 높아지고 있음.

그럼에도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는 단체별 자체 선거관리기구와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선거관리의 독립성·전문성·통일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회원종목단체의 장은 해당 종목의 운영 방향과 체육인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선출 절차 역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음.

이에 회원종목단체 회장도 법률상 투표 선출 원칙을 명확히 하고, 그 회장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의 공정성·투명성 및 체육단체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4 신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4(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의 위탁관리) ①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로서 대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단체(이하 “회원종목단체”라 한다)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한다.

② 회원종목단체는 제1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의 위탁에 관하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종목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선거 시기, 위탁선거의 수, 선거관리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위원회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관리와 관할위원회의 지정·조정 등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⑤ 대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의 회장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회원종목단체의 정관 및 선거 관련 규정 정비,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관리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회원종목단체의 회장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사유가 발생하는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3조의4(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의 위탁관리) ①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로서 대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단체(이하 “회원종목단체”라 한다)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한다.</u> <u>② 회원종목단체는 제1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u> <u>③ 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의 위탁에 관하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종목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선거 시기, 위탁선거의 수, 선거관리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위원회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u>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관리와 관할위원회의 지정·조정 등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⑤ 대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의 회장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회원종목단체의 정관 및 선거 관련 규정 정비,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관리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회원종목단체의 회장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